

## 동의대학교대학원학칙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학칙은 교육기본법의 교육이념과 동의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건학이념 및 대학원의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각 대학원의 조직과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제 및 교육목적) ① 본 대학교에 설치하는 대학원의 종류는 그 주된 교육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대학원 :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으로 대학원을 두며,
2. 특수대학원 : 직업인 또는 일반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으로 행정대학원, 경영대학원, 산업문화대학원, 교육대학원, 국가안전정책대학원을 둔다. <개정 2012. 11. 1, 2014. 12. 1, 2015. 10. 15>

② 각 대학원 고유의 교육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원 : 학문의 깊은 이론과 광범하고 정치한 응용방법을 연구, 교수하며 인격을 도야하여 국가와 인류사회의 복리증진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2. 행정대학원 : 행정 및 인접학문에 관한 깊은 이론과 다양한 실무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수, 연구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행정전문 인력과 지도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경영대학원 : 현대 정보산업사회에 필요한 경영의 이론과 실무를 교수, 연구하여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전문경영인을 양성함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한다.
4. 산업문화대학원 : 산업기술 및 문화의 이론과 실재를 과학적 방법으로 교수하고, 연구하여 산업 및 문화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고급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
5. 교육대학원 : 교육이론의 심층적 이해와 교육적 안목형성을 도야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자양성, 인격과 윤리의식을 가진 교육자양성, 다원화되는 학교문화를 창조하는 교육전문가를 양성하는데 교육목적을 둔다.
6. <삭제 2014. 12. 1>
7. 국가안전정책대학원 : 국가안전 제 분야의 국가기관, 형사사법기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유관기관의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국가안전과 관련된 법, 정책 등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병행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함양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국가안전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국가안전과 관련된 국가기관 등과의 교류·협력을 도모하여, 국가안전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신설 2015. 10. 15>

제3조 (과정) ① 일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각 과정 안에 연구기관, 산업체 및 정부기관과의 협동과정(이하 “학·연·산 협동과정”이라 한다)과 학과간 협동과정을 둘 수 있으며, 이 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 학·연·산협동과정에관한세칙 및 대학원학과간협동과정에관한세칙에 의한다.

③ 특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④ <삭제 2006. 12. 1>

제3조의2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 등)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학과,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이하 “계약학과 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신설 2010. 3. 1>

②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에 설치된 계약학과 등의 학생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0. 3. 1>

③ 계약학과 등의 명칭,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학생선발의 기준과 방법, 학생의 정원, 수업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약학과 등 설치·운영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 3. 1>

제4조 (계열·학과·전공 및 입학정원) ① 각 대학원에 설치하는 과정별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은 총정원체로 운영하며, 별표 1, 별표 2와 같다. 통합과정 입학정원은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에 포함된다.

② 학·연·산협동과정 및 학과간 협동과정의 정원은 교육부 정원정책기준 범위 안에서 정한다. <개정 2009. 2. 1, 2017. 3. 1>

③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09. 2. 1>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개정 2017. 3. 1>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 제2장 입 학

제5조 (입학시기) 각 대학원의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시기는 매 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6조 (입학지원 자격 및 제한) ① 각 대학원에 입학하려는 자는 다음의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국내외 대학(원)에서 학사학위(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의 경우) 또는 석사학위(박사학위과정의 경우)를 취득한 자 및 동 취득 예정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의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② 본 대학교에 재직하는 전임교원은 대학원에 입학할 수 없으며, 학문상 부득이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입학할 때에는 재학기간동안 휴직하여야 한다.

③ 교육대학원에 입학하려는 자의 자격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6. 3. 1>

1. <삭제 2006. 3. 1>

2. <삭제 2006. 3. 1>

3. <삭제 2006. 3. 1>

제7조 (입학지원절차) 각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입학 전형료와 함께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대학원입학전형에관한세칙에 따른다.

제8조 (입학전형) ① 각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전형을 거쳐야 한다. 단, 제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별도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전형방법, 시기,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입학전형에관한세칙에 따른다.

제8조의2 (입학관리) ① 각 대학원에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학원입시공정위원회에관한세칙에 따른다. <개정 2013. 5. 1>

제9조 (지원전공분야)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지원전공분야는 각 대학 및 각 대학원에서 이수한 전공분야와 동일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각 특수대학원은 하위 학위과정의 전공분야와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될 수 있다.

제10조 (편입학) ① 편입학은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대학원 교과과정에 따라 인정기준 범위 내에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 ② 각 학위과정의 편입학자는 이 대학원에 2학기 이상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③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편입학에관한세칙에 따른다.

### 제3장 등록·휴학·복학·제적 및 퇴학

제11조 (등록) ① 각 과정의 학생은 수업연한 학기까지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수업연한 내에 수료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 석사학위과정생은 미취득학점이 3학점 이하일 경우에는 등록금의 2분의 1, 4학점 이상일 경우에는 등록금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박사학위과정생은 미취득학점이 3학점 이하일 경우에는 등록금의 3분의 1, 4학점 이상 6학점 이하일 경우에는 등록금의 3분의 2, 7학점 이상일 경우에는 등록금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

- ②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학기에 연구등록을 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대학원연구등록에관한세칙에 의한다.
- ③ 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입학시 입학금 및 등록금, 기타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④ 등록을 완료하고 법령에 의하여 입학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 등이 발생한 자에게는 본 대학교 학칙 제57조에서 정한 등록금에관한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등록금을 반환한다. <개정 2008. 2. 1, 2010. 3. 1>

제12조 (휴학) 1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상을 결석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학생은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 (휴학기간) ①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통산하여 3학기(석·박사학위과정 공통)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수대학원은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산업문화대학원은 3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6. 3. 1, 2012. 11. 1>

- ② 휴학중인 자가 계속해서 휴학을 원할 경우 휴학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휴학연장은 1회에 한하며 1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 ③ 군입대 및 출산 등으로 인한 휴학은 휴학횟수 및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5. 1>

제14조 (복학) 휴학한 학생이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 (퇴학)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6조 (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2.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3. 재학연한 내에 수료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
4. 대학원위원회의 징계에 의해서 제적처분을 받은 자

제17조 (재입학) 퇴학 또는 제적된 자가 동일과정에 재입학을 원할 경우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제4장 수업연한·재학연한, 수업일수·교과·학점 및 수료

제18조 (수업·재학연한) ① 이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은 각각 2년 이상으로 하며,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6월 이상으로 한다. 다만 산업문화대학원은 2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6. 3.

1, 2012. 11. 1>

②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6월 이내, 석·박사 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 단, 교육대학원 및 편입학한 자는 조기수료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 5. 1>

③ 재학연한은 석·박사학위과정의 각 수업연한에서 1년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본 대학교 학칙 제40조2에 의거 5년제 학·석사연계과정의 수업연한은 1학기를 단축할 수 있다.

제18조2 (학년도·수업일수·휴업일) ① 각 대학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각 대학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③ 각 대학원의 휴업일은 본 대학교 학칙 제7조에 의한다.

제19조 (교과과정) ① 이 대학원 과정별 교과과정은 대학원교육과정운영에관한세칙 및 대학원교육과정전문위원회에서 심의·편성하는 교육과정에 따라 운영하며, 세부사항은 대학원교과과정운영에관한세칙에 따른다. <개정 2013. 5. 1>

② 본 대학교의 학사학위과정과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 (이수학점) ① 수료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은 석사학위과정에 있어서는 26학점 이상, 박사학위과정에 있어서는 40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② 특수대학원에서 논문 또는 작품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30학점(특수연구포함)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6. 3. 1>

제20조2 (선수과목의 이수) ① 각 학위과정에 타전공 입학자는 선수과목을 추가 이수하여야 한다.

② 선수과목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수업·이수학점·학점인정에관한세칙에 따른다.

제21조 (수료) ① 각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에서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제20조 제1항의 과정이수 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각각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의 수료로 인정한다.

②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의 평균평점은 3.0 이상이어야 한다.

③ 수료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료증명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④ 학위과정별 수료인정 시기는 매학기 말일로 한다.

제22조 (학점교류 및 인정) ① 각 대학원과 국내·외 대학교간 협력 및 외국대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와 학생의 전공분야 연구를 위하여 취득한 학점을 당해 학과주임교수가 인정하고 대학원장의 허가에 의하여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학점교류 및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수업·이수학점·학점인정에관한세칙에 따른다.

제23조 (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가는 다음과 같다.

등급	평점	점 수
A+	4.5	95~100
A0	4.0	90~94
B+	3.5	85~89
B0	3.0	80~84
C+	2.5	75~79
C0	2.0	70~74
F	0	69이하

② 학업성적의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수업·이수학점·학점인정에관한세칙에 따른다.

## 제5장 자격시험

제24조 (자격시험의 종류) 이 대학원 과정별 학위취득을 위한 자격시험인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외국어시험및종합시험에관한세칙에 따른다. <개정 2008. 2. 1>

제25조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기) 학위청구논문 자격시험은 매 학기 초에 실시하며, 응시자격 등 세부사항은 대학원외국어시험및종합시험에관한세칙에 따른다.

제26조 <삭제 2004. 3. 1>

제27조 <삭제 2004. 3. 1>

## 제6장 학위논문

제28조 (학위논문의 제출) 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는 논문지도교수와 학과주임 교수의 허가를 받아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② 학위청구논문의 제출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학위논문심사에관한세칙에 따른다.

제29조 (학위논문의 심사) ① 학위청구논문의 심사는 본 대학교 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자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심사위원(석사학위의 경우에는 3인 이상, 박사학위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이 행한다.

② 학위청구논문의 심사는 구술시험과 병행하여 실시하며, 최종심사결과는 “가”, “부”로 정한다.

③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학위논문심사에관한세칙에 따른다.

## 제7장 학위수여

제30조 (학위의 수여) ①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과정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일반대학원에서는 학술학위를 수여하며, 특수대학원에서는 전문학위를 수여한다.

③ 이 대학원 각 학과 및 과정의 학위종별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학위수여에관한세칙에 따른다.

제30조의2 (복수학위 수여) ① 외국 대학과의 대학원과정 복수학위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양 대학은 각각 별도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복수학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의국대학과의복수학위수여에관한세칙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9. 2. 1, 개정 2013. 5. 1>

제31조 (명예박사학위의 수여) 명예박사학위는 학술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의 향상·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32조 (학위수여의 취소)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 제8장 공개강좌·연구과정

제33조 (공개강좌) ① 직무, 교양 또는 연구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의 습득을 필요로 하는 자를 지도하기 위하여 대학원

별로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과목, 기간, 수강인원, 장소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공개강좌운영에관한세칙에 따른다.

제34조 (연구과정) 연구과정은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법령에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이 대학원 해당 학과의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연구과정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제35조 <삭제 2004. 3. 1>

제36조 <삭제 2004. 3. 1>

## 제9장 학생지도·의무, 장학 및 연구보조, 포상 및 징계

제37조 (학생지도·의무) 학생은 본 대학교 및 대학원 학칙을 준수하고 신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되며, 교수의 지도에 따라 연구에 정진하여야 한다.

제37조의2 (장학금 및 연구보조) ① 품행이 방정하고 학력이 우수한 자에게는 장학금이나 연구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유급조교로도 추천할 수 있다.

②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장학금지급에관한세칙에 따른다.

제37조의3 (포상 및 징계) ① 학교와 지역사회에 크게 공헌하였거나 타 학생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② 학생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학원장의 보고에 의하여 총장이 이를 징계할 수 있다.

## 제10장 직제와 대학원위원회

제38조 (직제) ① 대학원에 원장 외에 부원장 및 학위과정의 각 전공마다 교원(조교는 제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원은 본 대학교에 재직중인 교원으로 한다.

③ 대학원의 학위과정이 설치된 각 학과(전공)마다 학과(전공)주임교수를 둘 수 있으며, 학과(전공)주임교수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학과주임교수지도교수및공동지도교수에관한세칙에 따른다.

제39조 (대학원위원회의 구성) ① 이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본 대학교의 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학원장 및 교무처장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

③ 대학원위원회의 산하에 필요한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1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특별히 규정된 직무 외에 이 대학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 학칙 및 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학생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42조 (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중요한 심의사항이 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장 학칙개정

제43조 (학칙의 개정) ① 학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삭제 2017. 3. 1>

③ 학칙 개정안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장이 이를 확정하여 공포한다. <개정 2008. 2. 1, 2017. 3. 1>

④ <삭제 2017. 3. 1>

## 제12장 준용규정

제44조 (준용규정) 기타 이 학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제45조 (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 각종 세칙에 따른다.

### 부 칙

1. 이 대학원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폐지규정) 이 학칙의 시행과 동시에 일반대학원학칙, 행정대학원학칙, 경영대학원학칙, 산업기술대학원학칙, 교육대학원학칙, 영상정보대학원학칙은 폐지한다.
3.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일반대학원학칙, 각 특수대학원학칙의 학위과정 별 학과(전공), 학과간 협동과정은 이 학칙에 의한 학위과정별 학과(전공), 학과간 협동과정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당시의 종전의 일반대학원학칙, 각 특수대학원학칙에 의한 당해 대학원의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한 재적생으로 본다.  
③ 이 학칙의 부칙 2(폐지규정)에 의하여 구 학칙이 폐지됨에 따라 이 학칙의 시행당시의 각 대학원 재적생에게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에는 구 학칙을 적용한다.
4. 이 개정 학칙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계열별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학칙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계열별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 학칙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6조, 제13조, 제18조, 제20조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 학칙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계열·학과·전공 및 입학정원)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 학칙은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경과조치) 경영대학원 기후경제학전공, 관광·레저경영학전공으로 전공명칭이 변경된 금융경제학전공 및 호텔·관광경영학전공의 재적생은 2008학년도부터 기후경제학전공, 관광·레저경영학전공의 재적생으로 본다.
11. 이 개정 학칙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대학원 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나노공학과 재적생은 융합부품공학과 재적생으로, 컴퓨터응용공학과 재적생은 컴퓨터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③ (경영대학원 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회계학전공 재적생은 세무회계학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④ (교육대학원 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교육행정전공 재적생은 교육행정및교육방법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13.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정원조정에 따른 학과 신설, 폐지, 통합)

1) 대학원에 중·한번역학과(박사과정), 문헌정보·사학과(석,박사과정), 경제·무역학과(석사과정), 수확정보통계학과(석,박사과정), 화학·환경공학과(석,박사과정), 도시공학과(박사과정), 정보통신공학과(박사과정), 조선해양공학과(석사과정)를 신설하고, 현대문예학과(석사과정), 아동교육학과(석사과정), 문헌정보학과(석사과정), 사학과(석,박사과정), 정치외교학과(박사과정), 경제학과(석사과정), 무역학과(석사과정), 회계학과(석사과정), 수학과(석사과정), 정보통계학과(석,박사과정), 건축학과(석사과정), 건축설비공학과(석사과정), 화학공학과(석사과정), 환경공학과(석사과정), 도시환경공학과(박사과정), 정보통신·소재공학과(박사과정)는 폐지한다. 또한 현대문예학과는 국어국문학과와 통합하여 국어국문학과(석,박사과정)로, 회계학과는 경영학과와 통합하여 경영학과(석,박사과정)로, 건축학과, 건축설비공학과, 건축공학과는 건축공학과(석,박사과정)로, 멀티미디어공학과, 영상정보공학과, 게임공학과는 멀티미디어공학과(석/박사)로 통합한다.

2) 경영대학원에 컨설팅학과를 신설한다.

3) 산업대학원에 도시·부동산공학과, 환경공학과를 신설하고, 도시환경공학과를 폐지한다.

③ (학·연·산 협동과정 신설)

건축공학 학·연 협동과정(석,박사과정)을 신설한다.

④ (정원조정에 따른 학과 명칭변경)

1) 대학원의 중어중문학과(석사과정)는 중·한번역학과(석사과정)로, 교육학과(박사과정)는 평생교육학과(박사과정)로, 경제학과(박사과정)는 경제·무역학과(박사과정)로 명칭변경 한다.

2) 영상정보대학원의 컴퓨터영상음악학과는 뉴미디어음악학과로 명칭변경 한다.

⑤ (경과조치)

1) 대학원 현대문예학과(석사과정), 아동교육학과(석사과정), 문헌정보학과(석사과정), 사학과(석,박사과정), 정치외교학과(박사과정), 경제학과(석사과정), 무역학과(석사과정), 회계학과(석사과정), 수학과(석사과정), 정보통계학과(석,박사과정), 건축학과(석사과정), 건축설비공학과(석사과정), 화학공학과(석사과정), 환경공학과(석사과정), 도시환경공학과(박사과정), 정보통신·소재공학과(박사과정)의 재적생 학사업무는 입학당시 학칙을 적용하며, 중어중문학과(석사과정) 재적생은 중·한번역학과(석사과정) 재적생으로, 교육학과(박사과정) 재적생은 평생교육학과(박사과정) 재적생으로 경제학과(박사과정) 재적생은 경제·무역학과(박사과정) 재적생으로 본다.

2) 산업대학원 도시환경공학과 재적생 학사업무는 입학당시 학칙을 적용한다.

3) 영상정보대학원 컴퓨터영상음악학과 재적생은 뉴미디어음악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14.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정원조정에 따른 학과 신설, 폐지, 통합)

1) 대학원에 금융보험·부동산학과(석,박사과정), 화학생물학과(석,박사과정), 간호학과(박사과정), 산업경영·융합부품공학과(석,박사과정), 음악학과(박사과정)를 신설하고, 금융보험학과(석사과정), 재무부동산학과(석사과정), 화학과(석사과정), 생물학과(석사과정), 융합부품공학과(석사과정), 산업경영공학과(석사과정), 부동산학과(박사과



정), 생물학과(박사과정), 산업경영공학과(박사과정)는 폐지한다.

2) 교육대학원에 청소년교육·상담전공을 신설하고 전산교육전공을 폐지한다.

③ (정원조정에 따른 학과 명칭변경)

교육대학원 생활체육교육전공을 태권도교육전공으로 명칭변경 한다.

④ (경과조치)

1) 대학원에 금융보험학과(석사과정), 재무부동산학과(석사과정), 화학과(석사과정), 생물학과(석사과정), 융합부품 공학과(석사과정), 산업경영공학과(석사과정), 부동산학과(박사과정), 생물학과(박사과정), 산업경영공학과(박사과정)의 재적생 학사업무는 입학당시 학칙을 적용한다.

2) 교육대학원에 전산교육전공의 재적생 학사업무는 입학당시 학칙을 적용하고, 생활체육교육전공 재적생은 태권도교육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15. 이 개정 학칙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정원조정에 따른 학과 신설, 폐지, 통합)

1) 대학원에 학과간 협동과정인 불교문화학과(석/박사), 동아시아 국제학과(석/박사), 보건의과학과(석/박사)를 신설한다.

2) 경영대학원에 경영정보·e비즈니스전공, 관광·레저경영학전공, 컨설팅학전공을 폐지한다

3) 산업대학원은 산업문화대학원으로 명칭 변경하며 예술치료학과, 융합예술음악학과를 신설하고, 컴퓨터공학과와 산업경영공학과는 컴퓨터·산업경영공학과로 통합한다.

4) 교육대학원에 창의영재교육전공을 신설한다.

③ (정원조정에 따른 학과 명칭변경)

1) 대학원의 바이오품질제어학과(석/박사)는 스마트바이오헬스학과로 명칭 변경 한다.

2) 경영대학원의 국제통상학전공은 무역통상학전공으로 명칭 변경한다.

3) 영상정보대학원의 디지털방송영상학과는 영상콘텐츠학과로 명칭 변경 한다.

4) 교육대학원의 교육행정및교육방법전공은 교육방법및교육컨설팅전공으로 명칭변경 한다.

④ (경과조치)

1) 대학원의 바이오품질제어학과 재적생 학사업무는 입학당시 학칙을 적용한다.

2) 경영대학원에 경영정보·e비즈니스전공, 관광·레저경영학전공, 컨설팅학전공 재적생 학사업무는 입학당시 학칙을 적용한다.

3) 산업문화대학원의 컴퓨터공학과와 산업경영공학과 재적생은 컴퓨터·산업경영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17. 이 개정 학칙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18.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정원조정에 따른 학과 신설)

1) 대학원에 경찰소방학과(박사과정), 임상병리학과(석사과정), 스토리텔링학과(석/박사과정), 글로벌경영학과(석/박사과정)를 신설한다.

③ (정원조정에 따른 학과 명칭변경)

1) 대학원의 경찰행정학과를 경찰소방학과로 명칭변경 한다.

19.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정원조정에 따른 학과 신설)

- 1) 대학원에 학과간 협동과정인 공간정보시스템학과(석사과정)를 신설한다.
- 2) 산업문화대학원에 뉴미디어음악학과, 영화영상콘텐츠학과를 신설한다.
- 3) 교육대학원에 독서교육전공,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을 신설한다.

③ (정원조정에 따른 모집중지)

- 1) 경영대학원에 비즈니스경제학, 세무회계학, 유통물류학 전공을 모집 중지한다.
- 2) 산업문화대학원에 융합예술음악학과를 모집 중지한다.
- 3) 교육대학원의 영양교육전공은 모집 중지한다.
- 4) 영상정보대학원을 모집 중지한다.

④ (정원조정에 따른 학과 통합 및 명칭 변경)

대학원에 산업경영·융합부품공학과와 신소재공학과를 신소재·산업경영공학과(석, 박사과정)로 통합 및 명칭 변경한다.

⑤ (정원조정에 따른 학과 명칭 변경)

- 1) 대학원의 철학·윤리문화학과(석, 박사과정)는 철학상담·심리학과로 명칭 변경한다.
- 2) 산업문화대학원의 인터넷응용공학과를 소프트웨어응용공학과로 명칭 변경한다.

20.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정원조정에 따른 학과 명칭 변경)

- 1) 대학원의 국어국문학과를 국어국문·문예창작학과(석, 박사과정)로, 경영학과는 경영·회계학과(석, 박사과정)로, 신소재·산업경영공학과는 신소재공학과(석, 박사과정)로, 화학·환경공학과는 화학·환경·산업공학과(석, 박사과정)으로 명칭 변경한다.
- 2) 국가안전정책대학원에 경찰행정학과, 산업보안학과, 해양안전학과, 소방방재학과를 신설한다.

21.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2.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3.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정원조정에 따른 학과 신설)

- 1) 대학원에 학과간 협동과정인 영유아교육학과(석, 박사과정)를 신설한다.
- 2) 경영대학원에 유통물류학전공을 신설한다.
- 3) 산업문화대학원에 미디어·디자인공학과, 예술경영학과를 신설한다.

③ (경과조치)

- 1) 영상정보대학원 2017학년도 제1학기 이후 학위수여예정자의 소속을 산업문화대학원으로 변경하며, 변경된 대학원에서 학위를 수여한다.
- 2) 영상정보대학원 영상콘텐츠학과와 영화영상학과는 산업문화대학원 영화영상콘텐츠학과에서, 영상정보대학원 뉴미디어음악학과는 산업문화대학원 뉴미디어음악학과에서 학위(학위종별 후드 색상 포함)를 수여한다.

[별표 1]

일반대학원 학위과정별 학생정원

계열 및 구분	석사 학위 과정		박사 학위 과정	
	학 과 명	입학정원	학 과 명	입학정원
인문사회계열	국어국문·문예창작학과	182	국어국문·문예창작학과	90
	중·한번역학과			
	일어일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문헌정보·사학과			
	철학상담·심리학과			
	평생교육학과			
	인문광고학과			
	법학과			
	경찰소방학과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사회복지학과			
	경제·무역학과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경영·회계학과			
	경영정보·e비즈니스학과			
유통관리학과				
호텔·관광·외식경영학과				
자연계열	수학정보통계학과	182	수학정보통계학과	90
	물리학과			
	화학생물학과			
	생명융합학과			
	스마트바이오헬스학과			
	간호학과			
	인상병리학과			
	보육·가정상담학과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			
공학계열	건축공학과	182	건축공학과	90
	토목공학과			
	도시공학과			
	기계공학과			
	전기공학과			
	지능시스템공학과			
	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IT융합학과			
	화학·환경·산업공학과			
신소재공학과				
디지털미디어공학과				
조선해양공학과				
예체능계열	음악학과	182	음악학과	90
	미술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의학계열	체육학과	182	체육학과	90
	한의학과			
학·연·산 협동과정	건축공학	182명	건축공학	90명
학과간 협동과정	동아시아국제학과	182	동아시아국제학과	90
	불교문화학과			
	스토리텔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영유아교육학과			
	보건외과학과			
공간정보시스템학과				
소 계		182명		90명

[별표 2]

## 특수대학원 학생정원

특수대학원명	학 과	계 열	전 공	입학정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인문·사회	행정학, 정책학, 정부예산회계학	30
	부동산학과		부동산법학, 부동산정책학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경영대학원		인문·사회	무역통상학	30
			경영학	
			외식산업건설경영학	
			금융보험학	
			재무부동산건설경영학	
			호텔·컨벤션경영학	
산업문화대학원	전기및전자공학과	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45
	건축공학·건축설비공학과		건축공학, 건축설비공학	
	건축학과		건축학	
	토목공학과		토목공학	
	정보통신공학과		정보통신공학	
	기계공학과		기계공학	
	컴퓨터·산업경영공학과		컴퓨터공학, 산업경영공학	
	소프트웨어응용공학과		소프트웨어응용공학	
	미디어·디자인공학과		미디어·디자인공학	
	도시·부동산공학과	도시·부동산공학		
	환경공학과	환경공학		
	산업디자인학과	예체능	산업디자인학	
	스포츠산업학과		스포츠산업학	
	예술치료학과		예술치료학	
	음악학과		음악학	
	뉴미디어음악학과		뉴미디어음악학	
	영화영상콘텐츠학과		영화영상콘텐츠학	
	예술경영학과		예술경영학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인문·사회	교육방법및교육컨설팅	40
			국어교육	
			영어교육	
			유아교육	
			평생교육	
			유아·초등영어교육	
			청소년교육·상담	
			창의영재교육	
			독서교육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자연	수학교육	
			공통과학교육	
		예체능	체육교육	
태권도교육				
국가안전정책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인문·사회	경찰학	20
	산업보안학과		범죄학	
	해양안전학과		산업보안학	
	소방방재학과		산업안전학	
			해양경찰학	
	해양안보학			
	소방학			
	재난관리학			
소계				165명

[별지 제1호 서식]

수료증명서

제 ○○○ 호

수료증서

성명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학)석사학위과정(○○○전공)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동의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 ○ ○ (직인)

위의 증명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동의대학교 총 장 (학위) ○ ○ ○ (직인)